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지청장 천대원  
전화 063-630-4301 / 팩스 063-626-3324

## 보도자료

2022. 11. 14.(월)

제 목

### 휴대폰 요금청구지 주소를 허위로 이전시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부정투표한 36명 기소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☑ 사건관계인이 공적(公的) 인물인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,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,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(제12조 제1항 제2호)

- 오늘(11. 14.) 전주지검 남원지청(지청장 천대원)은 6·1 지방선거 ○○당 장수군수 당내경선 관련,
  -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폰 73대의 요금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수로 허위 이전한 후 당내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한 관계자 36명에 대해,
  -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(공직선거법위반)과 ○○당의 경선업무를 방해 (형법상 업무방해)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- 당내경선에서 ‘휴대폰 요금청구지’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특정하여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구조를 악용하여, 타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지인을 경선투표에 참여시키는 범행 수법을 밝혀 기소한 사례임

## 1 피고인 및 공소사실

○ 별지와 같음


## 2

## 수사경과

- '22. 4. 29. 전북도경, 수사개시
  - ※ 10. 11. G 구속영장 청구(경찰 신청) / 법원 기각(혐의 소명되나, 구속 상당성 부족)
- '22. 10. 25. 전북도경, 사건 송치
- '22. 10.~11. 검찰, 피의자들 조사를 통해 여론조작 방식 추가 특정 등
- '22. 11. 14. 불구속 기소

## 3

##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

- 본건은 당내경선에서 '휴대폰 요금청구지'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특정하여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구조를 악용하여,
  - '휴대폰 요금청구지 이전 방식'으로 허위의 경선 투표권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참여시키는 범행 수법을 밝혀 기소한 사례임
-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후보자 등의 친인척과 지인들의 휴대폰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 내 주택·공장·점포 등으로 변경시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투표하게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왜곡한 중대 범죄임
  - 장수군은 유권자가 약 16,000명 정도로 비교적 적어, 73명 정도의 허위 유권자만 확보하여도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유인이 있음
  - 이 사건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부정하게 투표한 횟수만 43회에 달하고,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1, 2위 후보의 표차이가 78표에 불과했음
- 향후 검찰은 경찰·선관위와 적극 협력하여 유사 사례를 엄단함으로써 공명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음 

**[별지]**

**피고인별 신분 및 공소사실 요지**

| 지지후보   | 신분 등   | 공소사실 요지  |
|--|--|--|
| <p>최○○<br/>(현 군수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A(후원회 회계책임자)<br/>B~D(각 일반인)</p>                 | <p>[허위 투표인 모집]<br/>허위 투표자 16명을 모집, 투표하게 함<br/>- (A, B 공모) 7명 모집, 일반 여론조사 9회, 당내경선 여론조사 4회 응답<br/>- (C, D 공모) 9명 모집</p>   |
|  | <p>E(최○○ 친동생) 등 7명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[부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]<br/>요금청구지 허위 변경 후 각각 2~4회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</p>  |
|  | <p>A(후원회 회계책임자)<br/>F(일반인) 등 5명</p>                | <p>[거짓응답 권유]<br/>권리당원들에게 '권리당원이 아니다'고 거짓 응답해 일반국민 당내경선 여론조사까지 참여하도록 권유</p>   |
| <p>장○○<br/>(전 군수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G(장○○ 친동생)<br/>H(선거사무실 홍보팀장)<br/>I~K(각 일반인)</p> | <p>[허위 투표인 모집]<br/>허위 투표자 48명을 모집, 투표하게 함<br/>- (G) 17명 모집, 일반 여론조사 17회, 당내경선 여론조사 8회 응답<br/>- (H, I 공모) 7명 모집, 일반 여론조사 2회 응답<br/>- (J) 10명 모집, 일반 여론조사 3회 응답<br/>- (K) 5명 모집, 일반 여론조사 5회, 당내경선 여론조사 2회 응답</p> |
|  | <p>L(장○○ 조카) 등 15명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[부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]<br/>요금청구지 허위 변경 후 각각 2~4회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</p>  |
|  | <p>G(장○○ 친동생)<br/>K(일반인)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[당내경선 중복응답]<br/>지인 등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·관리하며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응답<br/>- (G) 52대 개통·보관, 일반 여론조사 11회, 당내경선 여론조사 21회 응답<br/>- (K) 4대 개통·보관, 당내경선 여론조사 2회 응답</p>   |
|  | <p>G(장○○ 친동생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[거짓응답 권유]<br/>권리당원들에게 '권리당원이 아니다'고 거짓 응답해 일반국민 당내경선 여론조사까지 참여하도록 권유</p>   |
| <p>※ 장○○ 지지자들은 장○○ 공천 배제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는 최○○(현 군수)를 지지</p> |  |  |